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5년 7월 6일부터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시중노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중노임이 예정가격에 전액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재정경제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제정하고 7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본고는 주요내용을 간추려 게재한 것으로, 개정된 전문은 우리 협회 진흥부에서 제작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의하되, 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재정경제원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 견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영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를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 영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제1호: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영 제9조 제1항 제호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적가격 또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시중노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중노임이 예정가격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했다.

※ 동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 노무비·경비(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 영 제9조 제1항 제2호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제23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 영 제13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사” 및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말한다.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고속도로 건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5.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 건설공사

- 16. 하수도 건설공사
- 17. 관람집회시설공사
- 18. 전시시설공사
- 19. 공용청사 건설공사
- 20. 송전공사
- 21. 변전공사
- 22. 공동주택 건설공사

※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입찰 시 하도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대입찰 및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설공사 등 8개 공종을 추가하여 14개 공종에서 22개 공종으로 확대했다.

※ 영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리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자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영 제19조(부대입찰) 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시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제28조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의 지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시공업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매년 2월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지정기준 등에 의하여 지정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된 자로 본다.

③ 우수용역업자의 지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지정기준을 준용하되, 필요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 계약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를 지명·위탁하여야 한다.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시공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우수건설업자 지정기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시공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기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 영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1항 제7호: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40조 (입찰참가신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

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일 전일로 한다.

제43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년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입찰참가신청시 입찰참가신청서 등 5개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입찰참가신청서 1개의 서류로 통합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했다.

※ 영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 제4호 :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42조 (입찰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한 경

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⑥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 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법인이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임직원 중 임원에 대하여만 대리입찰을 허용하던 것을 일반직원도 대리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 영 제44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6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 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 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조정했다.

※ 영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 각 중앙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정당업자를 제재함에 있어서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등을 제재하는 경우에는 그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그외의 사유에 의한 것은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 및 방법 등을 조정했다.

[별표 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① 교각과 교각 사이의 간격이 500m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길이 500m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 교량중 교면포장·이음부·간간시설 등 "①" 및 "②" 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①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①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석도 ①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마. 항만·방파제·사방 또는 간척 ①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바. 도로입거·축구 및 포함한다) 사. 덩 ①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10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아. 상·하수도 ①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②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3년
자. 하천시설물 ① 하천제방상의 수문	5년
② "①" 외의 시설	3년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카. 부지정지	2년
타. 조정시설물 또는 조정식재	2년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①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3년
하. 기타 토목공사	1년
거. 건축 ① 대형공공서 건축물(공동주택·교정 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10년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①" 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5년
③ 건축물중 "①" 및 "②"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너. 전문공사 ① 실내의장	1년
② 토공	2년
③ 미장 또는 타일	1년

④ 방수	3년
⑤ 도장	1년
⑥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⑦ 창호제작 또는 설치	1년
⑧ 지붕 또는 판금	3년
⑨ 철물(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⑩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3년
⑪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로·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열설비	2년
⑫ 승강기 또는 인양기설비	3년
⑬ "⑩" 및 "⑫" 외의 건물내설비	2년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이 100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공사현장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공사장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라.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마. 책임감리 공사에 있어 감리 소홀로 설계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 등보다 낮은 자재를 써서 시공을 부정당하게 한 감리업체

(2)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부실벌점이 50점 이상 100점 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때를 말한다)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마.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낙찰된 자

바.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시공을 부실하게 한 자

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3)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부실벌점이 20점 이상 50점 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다른 사람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마.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바. 조사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사.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아.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자.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카. 뇌물을 주어서 계약조건이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독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